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59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박정훈 · 정성국 · 박덕흠
김은혜 · 김위상 · 진종오
고동진 · 김장겸 · 최수진
김형동 · 박정하 · 배현진
한지아 · 유용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과 대리계정을 악용하여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의 검색순위, 상품 평점, 이용 후기, 조회수 및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계정을 대여·양수하거나 도용하여 허위 리뷰 작성 및 검색어 조작에 악용하는 이른바 ‘대포계정’ 기반의 조작 행위가 점차 조직화·산업화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이러한 신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를 통한 즉각적인 사법 처리가 어렵고, 공정위의

처벌 선례 부재 등으로 고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통한 처벌은 피해자인 플랫폼 사업자의 직접적인 피해 입증 및 고소가 필수적이어서 수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계정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처벌할 뿐 정보통신망 내 ‘거짓 정보 생성 및 후기 조작’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망 내에서 자행되는 부정한 조작 행위를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처벌하는 전용 규정을 신설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부여해 부정한 정보 유통으로부터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및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1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4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1(정보통신서비스의 부정한 조작 금지) ① 누구든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명령을 반복 수행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검색순위, 평점, 후기,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2. 대가 지급 등을 통하여 타인 명의의 계정을 대여·양수하거나 도용하여 거짓 정보나 조작된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행·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대리 계정을 제공·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48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행·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대리 계정을 제공·유통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48조의11(정보통신서비스의 부 정한 조작 금지) ① 누구든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 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지정된 명령을 반복 수행하 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검색 순위, 평점, 후기, 조회수 또 는 추천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u> <u>2. 대가 지급 등을 통하여 타 인 명의의 계정을 대여·양 수하거나 도용하여 거짓 정 보나 조작된 후기를 작성하 는 행위</u> <u>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 행·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프 로그램 및 대리 계정을 제공·</u>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략) <u><신설></u> 2. ~ 5. (생략)	<u>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부정당한 조작 방지의무를 다하여야 한다.</u> 제72조(벌칙) ①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u>1의3. 제48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행·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대리 계정을 제공·유통한 자</u> 2. ~ 5. (현행과 같음)
--	---